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정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문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문서번호 맑은사회 96-09-02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님
발 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담당 : 이은경, 김정선 : 796-8364)
제 목 부패사정기구 이대로 좋은가?
날 짜 1996.9.4. (총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토론회
'현 부패사정기구이대로 좋은가?
- 부패사정기구의 개혁방향'

일시 및 장소 : 1996.9.4 (수)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실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본부장 : 金勗國)는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현 부패사정기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국회 입법조사분석실의 姜聖男 박사는 주제발표1- '부패사정기관의 현실과 문제점' 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사정기구를 하나하나 들어가며 그 운영실태와 문제점들을 상세히 밝혔다. 또 서울대 洪準杓 교수는 주제발표2-'부패방지를 위한 법제개혁과 특별검사제'에서 기존의 특별수사부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현재 부패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특별수사부의 필요성과 그 구상에 대해 정리를 했다.

3. 이토론회에는 그동안 맑은사회만들기본부에서 지난 4.11총선 이후에도 당선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벌려온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유권자 약속문'에 동의한 신한국당의 李信範 의원과 국민회의의 秋美愛 의원이 참석하여 부패방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부패방지 시스템의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을 찾기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4.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앞으로도 부패방지를 위한 여러 정책적 대안들을 각 분야에 걸쳐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며, 지금까지 120명의 의원이 서명한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유권자 약속운동'과 시민서명운동을 계속하여 각계의 부패방지에 대한 의지와 요구를 모아 국회에 부패방지법을 시민입법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 : 행사진행표 1부, 발표문 요약 1부, 서명의원명단1부. 끝.

※별첨1. 행사진행표

발표1. 부패사정기관의 현실과 문제점

- 姜聖男 (행정학 박사, 국회입법조사분석실 법사행정담당연구관)

발표2. 대안으로서의 특별수사부

- 洪準形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토론 : 李信範 (국회의원, 신한국당) 秋美愛 (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車炳直 (변호사) 申大均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운영위원장)

부패사정기관의 현실과 문제점

강 성 남 박사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Ⅰ. 머리말

최근에 홍콩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정치경제 리스크 컨설턴시(PERC)』가 아시아 지역 12개 국가의 부패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아시아 인텔리전스』에 게재한 바 있다.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대만, 태국 등 3개국의 올해 부패정도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제 부패라운드(corruption round)는 그린라운드, 노동라운드, 경쟁라운드와 함께 세계무역질서를 지배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상공회의소(ICC)는 국제 거래시 부패를 없애기 위해 상업활동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목적의 뇌물 수수를 금지하는 쪽으로 기존 통제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 현실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국제경쟁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입법적 보완장치의 수준이 경쟁의 중요지표가 될 전망이다. 물론 이에 앞서 반부패 의식의 확산과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근자에 실시한 『기업의 官에 대한 여론조사』(전국의 5백개 기업체 임원 및 부장,과장 6백 6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업무처리자세 등에 대해 조사한 것)결과를 보면 몇가지 과제를 도출할 수있다. 첫째, 금품이나 향응제공이 원활한 업무처리상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대한 대책마련이다. 둘째, 아직도 여전히 금품이나 향응제공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다. 끝으로 정기적으로 상납 또는 이권과 관련한 뇌물수수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마련이다. 첫째 과제는 의식개혁의 과제이고, 둘째와 셋째 과제는 사정기구의 활동과 기구개혁과 사후처벌과 관련된 제어장치의 교정을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부패사정기구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급하고자 한다.

Ⅲ. 문제점 종합

한 조사결과(한국행정연구원, 1992.) 따르면 정부의 사정활동이 대국민 홍보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해 사정담당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비경험 응답자 모두가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전반에 걸친 부정부패 문제를 전담하는 총체적 사정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청와대 사정, 국무총리실 사정, 총무처의 복무감사, 검찰의 사정, 공직자 윤리위원회 및 부정방지대책위원회, 각급 행정부처의 자체감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정관련 기구들이 중복되어 존재하고 있다.

사정기구의 중복현상은 첫째, 상급기관으로부터의 빈번한 감사, 수시점검, 지도 방

문 등으로 하급행정기관은 본연의 직무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는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감사의 회수가 아니라 효율적인 감사기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사정기구의 중복현상은 피감사기관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주의 등의 소극적 업무활동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사정기구들간의 공조체제 구축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체제로는 지능화, 은밀화, 조직화되는 부패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며 산발적·대증적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정기구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사정기구의 비독립성과 비전문성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부정부패사정 활동을 위해서는 부패관련자료의 축적이 이뤄져야 한다. 부정부패범에 관련된 전산데이타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사정기구간에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부패사정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부정부패 관련 법제도 여러 법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부정방지를 위한 일관된 체계와 논리를 기대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정부패근절을 위한 각 부문별 장단기 전략(계획)이 없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Ⅳ. 맺음말 : 부패사정기구의 개혁방향

일반예방적 성격의 부패사정기구로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예방적 성격의 부패사정기구로의 개편을 강조하는 것은 이른바 부패에 대한 사후적 '일벌백계'방식의 접근방법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이다.

첫째, 처벌의 극대화는 비리행위에 대한 한계저지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악의에서라기 보다는 업무미숙 등에 기인하여 비리가 발생한 경우에 무거운 벌칙을 가하는 것은 사회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셋째, 처벌의 강도를 높이게 되면 이것의 집행비용도 따라서 높아지게 되고, 처벌회피노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넷째, 감시활동을 최소화하면서 처벌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강화하는 것은 결국 극소수의 비리행위자만이 적발되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비리행위자간의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가혹한 처벌은 인지부조화를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비리행위를 유혹하는가 하면, 처벌의 실제적 집행에 대한 의문을 갖도록 하여 처벌의 위협효과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 끝으로 처벌이 무거워질수록 비리 행위자는 감사자나 감시자에게 뇌물을 줄 유인이 커지고 그 결과 양자 사이에 담합이 발생할 소지가 커진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일벌백계'식 접근방법의 부작용과 한계를 감안한다면 비리행위의 적발을 위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의 감시 및 감사활동의 강화를 중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감사활동의 강화를 위주로 하는 접근방법에 있어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비리행위 적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이다. 하나는 올바로 처리한 업무

를 감독자나 감사자가 그릇된 것으로 잘못 지적함으로써 나타나는 오류이다(통계학에서는 이를 제2종 오류: type Ⅱ error라고 부른다).한편 그릇되게 처리한 업무를 올바로 처리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이를 묵인함으로써 생겨나는 오류도 있다(이를 통계학에서는 제1종 오류: type Ⅰ error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의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무작정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결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적발활동과 처벌의 강도와 함께 기대벌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비리행위가 발견되어 그것이 실제적으로 처벌에 이르게 될 확률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함정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외부적 자극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관행의 진로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외부적 자극이나 개혁이 없이는 사회적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부패사정기구가 새로운 차원에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소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면 관계로 자세한 언급을 자제하고 사정기구개혁의 전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사정활동과 제도개선까지)을 실현할 수 있는 사정기구가 되어야 한다. 둘째, 부패의 일반예방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사정기구가 되어야 한다. 셋째, 부패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사정기구가 되어야 한다. 넷째,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정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개혁과 특별검사제

홍준형
(서울대, 공법학)

I. 문제의 제기

12·12, 5·17, 5·18 및 비자금 사건은 5공 때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6공 초기의 5공비리 및 수서사건과 함께 특별검사제의 '도입에 관한 논란을 촉발시키는 가장 주된 계기가 되었다.

당분간 신문지면의 머릿기사를 장식하게 될 12·12, 5·17, 5·18 및 비자금 사건이 종료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단순히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12·12, 5·17, 5·18 사건은 그 결과적 측면에서 보다는 우리나라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문시하게 만드는 역사적 증거로 기억되고 음미되어야 한다. 검찰이 12·12, 5·17, 5·18 및 비자금 사건에서 전두환·노태우 등을 기소했고 법원이 이들에 대한 제1심 유죄판결을 선고했다고 해서 이로써 종래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요구하게 했던 근본적 문제들이 해소된 것은 아니며, 설사 이 사건의 사법적 처리과정이 합당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할지라도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기초가 상실되는 것도 아니다. 특별검사제의 문제는 오히려 특정사건을 떠나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개혁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

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정부나 집권당 간부의 범법행위에 대한 혐의와 이에 대한 검찰권행사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이 상존하고 있다. 결코 새롭지 않은 특별검사제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현안이 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특별검사제의 도입문제는 바로 그러한 방법의 하나이다.

II.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방안

1. 특별검사제 도입의 기본방향

부패방지를 위하여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몇가지 변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에 특별검사제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과 특별검사제를 특별검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별도의 단행법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둘째, 특별검사제를 한시법으로 도입하는 방안과 영구법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셋째, 특별검사제를 특정사안에 관한 특별법차원에서 규정하는 방안과 특정사안의 제한없이 일반법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끝으로 특별검사제를 일정한 범위의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일정한 범주의 부패범죄에 한정하는 방안과 일정한 범위의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범죄 일반에 대해 도입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중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는 부패방지법의 차원에서 영구법으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별도의 단행법으로 일정한 범위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일정범위의 범죄에 한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특별검사제의 도입방안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의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하는가. 특별검사제가 담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일종의 발제형식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특별검사제는 그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른 나라, 특히 미국에서의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 1994년의 특별검사재수권법(Independent Counsel Reauthorization Act of 1994)이 특별검사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재정적·행정적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특별검사가 담당해야 할 사건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는 법무장관의 역할을 강화했으며, 법무장관에게 의회의 의원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특별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적지 않은 제도개선을 본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2)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형벌권행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검찰의 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설사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

나 권력형 부정부패를 수사하거나 소추함에 있어 검찰의 제1차적 판단권 및 결정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차적으로 검찰이 조사를 실시하여 수사 및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그 권한을 법무부장관 보다는 검찰청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법조인자격이나 업무관할상의 근접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본다.

(3)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경우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별검사에게는 그 권한 못지 않게 그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행정적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특별검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예산회계 및 업무상의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자칫 이 제도가 국가적 낭비와 비효율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권자는 형식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 하되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인정하거나, 미국의 경우처럼 법무부장관의 제청과 관할 특별재판부의 임명방식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명과정, 특히 그 제청에 관하여 대한변협에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 방안이다. 특별검사에 대한 재정 및 행정지원기능은 이를 법무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통제를 위해서는 감사원의 통제기능을 연결시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국의 특별검사재수권법의 경우처럼 정기적인 재임명제(periodic reappointment of independent counsel)를 채용하는 것도 특별검사의 활동이 무한정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4) 특별검사제의 인적 적용대상으로는 대체로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의 경우처럼 제한적으로 열거하되 대통령, 국무총리, 정부조직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각부의 장관 및 차관,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의한 각 처와 청의 장, 감사원의 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 및 국장,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차장 및 국장, 경찰청의 청장, 차장 및 지방경찰청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 및 검사, 국회의원, 군장성, 대통령선거를 위해 조직된 전국적 선거운동위원회의 주요간부, 기타 위와 같은 직위에 있었던 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기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 수사를 요청한 자 및 이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사항적 적용대상도 대체로 참여연대의 법안과 동일한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특별검사의 권한은 검사의 그것으로 하되 형사소송법상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부패범죄의 수사·소추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계좌추적권, 공공기관의 협조요구권 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특별검사로 임명된 자가 그 권

한행사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취득하게 된 비밀 기타 지식·정보·자료 등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참여연대의 부정방지법안의 경우처럼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공익제보자나 고소고발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미국의 경우처럼 특별검사로 하여금 특별검사제를 도입한 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법무부의 법집행에 관한 정책에 따르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국회에 그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그 밖에 특별검사의 신분보장이나 해임제한, 임무종료 등에 관하여는 대체로 미국의 특별검사재수권법상의 규율을 고려하여 정하면 될 것이다.

V. 맺는 말

이제까지 미진하나마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개혁방안의 하나로서 특별검사제를 검토해 보았다. 우리에게 있어 특별검사제는 반드시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이나 화이트워터사건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미 낯설지 않은 제도가 되어 있다. 그동안 하고 많은 권력형 부패사건을 접하고 그에 대한 미진한 검찰수사와 기소 등을 보고 의혹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언가 더 나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성공한 쿠데타 처벌불가능' 이란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시도했던 12·12, 5·17, 5·18사건에서의 검찰의 태도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렇듯 특별검사제도입에 대해서는 이미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요구와 합의가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전제했듯이 우리 사회에 만연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21세기의 지속가능한 사회와 국가공동체의 성패를 좌우할 결정적 요인이 되며,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만한 정의를 되살리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된다.곤경속에서 지혜가 솟아나듯이 우리는 지난 날의 어두움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위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 서명의원명단

당적	서약당선자 총120명 (9월4일현재)
신한국당 총 43명	박성범(중구)이재오(은평을)박수천(마포을)박범진(양천갑)김명섭(영등포갑)강성재(성북을)김덕룡(서초을)서상목(강남갑)홍준표(송파갑)맹형규(송파을)김형오(부산영도)한이헌(북,강서을)김기재(해운대,기장을)이윤성(인천남동갑)이경재(계양,강화을)남평우(수원팔달)홍문종(의정부)김문수(부천소사)목요상(동두천,양주)이국헌(고양갑)이웅희(용인)이상배(상주)황낙주(창원을)안상수(과천,의왕)권철현(부산사상갑) 김영선(전국구)조웅규(전국구)황규선(경기도 이천)김무성(부산남구을)/ 양정규(북제주)박세환(전국구)윤원중(전국구)황성균(경남사천)최연희(동해시)원유철(평택갑)이상희(부산남구갑)/김호일(마산합포)이원복(인천남동을)차수명(울산남갑)이신행(구로을)이사철(부천원미을)변정일(서귀포시,남제주군)이신범
국민회의 총 54명	김상우(광진갑)이상수(중랑갑)유재건(성북갑)김근태(도봉갑)설훈(도봉을)김원길(강북갑)임채정(노원을)김상현(서대문갑)김영배(양천을)정한용(구로갑)김민석(영등포을)이해찬(관악을)조철구(인천서구)정동채(광주서구)조홍규(광주광산)조성준(성남중원)이석현(안양동안을)최선영(부천오정)김영환(안산갑)천정배(안산을)유선호(군포)정동영(전주덕진)장영달(전주완산)최재승(익산갑)이협(익산을)윤철상(정읍)김홍일(목포신안갑)김경재(순천갑)조순승(순천을)정호선(나주시,군)김성곤(여천)김옥두(장흥,영암)배종무(무안)김인곤(함평,영광) 방용석(전국구)신낙균(전국구)천용택(전국구)이성재(전국구) 국창근(담양,장성)양성철(곡성,구례)최희준(안양시동안갑)추미애(광진을)김영진(강진,완도)김충조(여수)김종배(전국구)조찬형(전북남원)한화갑(목포,신안갑)이기문(계양,강화갑)/신기남(강서갑)김봉호(해남,진도)한영애(전국구)/김한길(전국구)안동선(부천원미갑)박정훈(임실,순창)
자민련 총8명	안택수(대구북을)이병희(수원장안)김고성(연기)조영재(대전유성)박신원(오산,화성)/황학수(강릉갑)/김범명(논산)이건개(전국구)
민주당총10명	이부영(강동갑)제정구(시흥)최욱철(강릉을)이수인(전국구)김홍신(전국구) 이규정(울산)이미경(전국구)권오을(안동갑)/장을병(삼척)이중재(전국구)
무소속 총5명	서훈(대구동을)백승홍(대구서갑)김재천(진주갑) 이해봉(대구달서을) 이상 당적변경전의 명단임. 홍사덕(강남을)